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16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3. 3.

서울특별시의회  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

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

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

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

발의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2조 지역서점에 관한 정의에 있어,

1에서 3호로 각 호별 요건을

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
□ 안 제10조 회의·운영에 대한 조항의 경우,

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를

분기별 한 차례 이상에서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규정하여,

보다 유연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□ 이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